

하리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4. 6. 24. ~ 6. 27.(4일간)

 감사범위 : 2012. 6. 11. 이후 업무전반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외 5명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본 처분 13건(시정 5, 주의 8)

○ 재정상 조치

- 3건 1,188,450원(회수 2건 961,450원 감액 1건 227,000원)

지적사항

1. 환경미화원 근무 개선대책 이행 부적정

- 환경미화원들의 부적절한 근무형태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청소행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근무관련 개선대책」을 시달하면서 면(面) 단위 지역의 경우 휴일(토, 일, 법정공휴일) 근무는 장날, 명절연휴, 기타 비상 근무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휴일 근무토록 규정하고, 또한 근무 중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면장 책임 하에 주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무를 하면서 휴일근무 시 면장의 근무명령을 득하지 아니하고 전례, 관습에 의한 휴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근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1회 이상 안전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 ▶ 면장 책임하에 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하고, 휴일근무가 꼭 필요한 경우 면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시행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2.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 통보 소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종합민원과-43934(2012.12.13)호에 따라 인감증명대리발급 시 본인에게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을 위임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함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인감증명대리발급 시 본인에게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즉시 통보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3. 인감증명 대리발급 절차 부적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인감증명사무편람에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인감증명대리발급을 하면서 ○○○ 외 1명에 대하여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 외 8명에 대하여는 대리인의 무인을 받지 않음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인감증명사무편람에 따라 인감 증명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발급대장 수령인란에 무인을 받은 후 교부 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4. 보안점검 소홀

- 예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한 규칙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에 무인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한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업무)에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지방□□*급 ○○○ 외 1명은 당직 및 초과 근무를 하면서 최종퇴청 시 보안점검에 소홀
 - ▶ 재택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표에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 청소·소등· 화기단속·문단속 상태 등 미비점을 점검하고 기록하고,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5. 영농안전장비(농약방제복) 공급 부적정

- 농정과-4033(2014.3.10.)호에 의거 『2014년 영농안전장비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영농안전장비(농약방제복) 공급은 최근 3년간 지급된 사실이 없는 농가를 우선 배정하고 지급대장을 작성 관리(2년간 사후관리)하여 특정인에게 매년 연속으로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영농안전장비(농약 방제복)를 공급에 있어서 ○○○ 외 9명에 대하여 2년 연속으로 공급(2014년 지급제외대상)하여 영농안전장비 업무에 소홀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6. 농업인자녀학자금 업무 소홀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매년 2월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장의 내용확인(농어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읍면담당자는 신청서 하단 읍면동 확인사항(주소 및 농어촌지역거주, 농업인여부, 국가기간, 지자체, 직장 등에서 학자금 수령 여부)을 확인하여 서명하고 대상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2014년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청인 서명누락, 이장확인 서명누락, 담당자 확인사항 기재 및 서명누락 14건을 하지 않는 등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업무에 소홀

- ▶ 누락된 서명 및 읍면동 확인사항을 보완·확인하여 학자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7.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 업무 소홀

- 산림축산과 2012년, 2013년 『월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의거 매월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후에는 반드시 기록관리 유지 및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되어 있으나, 2012~2013년 매월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 업무를 시행하면서 소 사육농가에 백신을 배부하고 대상 농가에 대해 수령 확인 서명을 받지 않아 구제역 방역업무에 소홀
- ▶ 가축사육농가에 예방접종 백신을 배부하고 수령확인란에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8. 경로당(노인여가시설) 관리카드 관리 소홀

-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현 실정에 맞게 보다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붙임” 사회복지과-9762(2008.4.16.)호로 경로당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2008.4.23.일부터 품목별 비품현황, 여가 프로그램 설비 및 운영, 운영조직, 비치서류 등이 포함된 변경된 『경로당 운영 관리카드』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지시 하였음에도, 관내 24개소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변경된 『경로당 운영 관리카드』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경로당을 관리하지 않음
- ▶ 경로당 현황에 대하여 변경된 경로당 관리카드로 재작성 관리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9. 의사무능력자 현금지출내역 확인 소홀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5편 수급(권)자 관리, II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급여가 수급자에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하고 읍·면·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현장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에는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되 고령 등 여건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구술로 확인하여 기재함으로서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2년

하반기부터 의사무능력자 6명에 대한 급여 관리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현금지출에 대한 지출내역 확인 소홀

- ▶ 지출분에 대하여 지출내역 및 증비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0. 환경미화원 봉급 과다 지급

-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68조(임금의종류) 및 제38조(병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병가를 허가 받았을 경우 봉급을 일할계산 하여야 함에도, 환경미화원 ○○○에 대하여 2012년 12월 봉급 지급시 병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478,450원 과다 지급
- ▶ 과다지급한 478,450원을 회수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시정 요구

11. 예산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직무수행경비,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에 대하여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시행시 시행 품의만 득하고 관급 자재 구입 및 장비임차 품의를 생략하고 집행
- ▶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시행시 시행 품의, 관급자재 구입 및 장비임차 품의를 득한 후 집행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2. 공사비 과다 계상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적용기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2014. 6.24.일 개찰한 하리 □□□□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설계시 아스팔트콘크리트 텍코팅 유제(RSC-4) 및 콘크리트 포장 비닐깔기 등 공사비 227,000원을 과다 계상 하여 사업 추진.
- ▶ 과다 계상된 공사비 227,000원을 감액조치하고, 관련법규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3.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적용기준, 공사계약일반 조건,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와 계약하여 시공한 □□□ 도수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콘크리트개거, 반중력식옹벽 등 구조물 시공을 합판거푸집(4회)로 계상하였음에도 시공시 유로품을 설치한 바,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이나 정산 조치 없이 공사비 483,000원(제 경비 포함)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483,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